

제4차산업경제위원회
2013.12.10(화)14:00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(공유재산)
무상사용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(공유재산) 무상사용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12월 02일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12월 04일

3. 제안 이유

-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시설(공유재산)을 사용허가 및 위탁관리 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판매장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

- 대상시설 :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336번길 105

나. 판매장(공유재산)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

- 사용목적 : 도내 중소기업지원 제품 판매 및 홍보

- 수탁자 : (재)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
관련 법인이나 단체

- 사용기간 : 위탁일로부터 3년간, 3년 단위로
기간 연장

다. 공유재산 무상사용 의회 동의 건의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(사용료 감면)
제1항4호에 의거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(공유재산) 무상사용 동의안'은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시설(공유재산)을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 관리시에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판매장을 활성화하

기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